

의안번호	2219077
의 회 인	임종득 의원
회 답 일	2026. 9. 3.
추계번호	26A27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의6(노후 설비 교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30조의6(노후설비 교체 지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¹⁾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된 태양에너지·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교체하여 안전 및 발전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사업을 통해 2026년 6월부터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²⁾ 시 융자를 지원하고 있음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제21462호, 2026.9.18. 시행예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사업의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예산 8,802억 9,400만원 중 태양광 노후 인버터 교체를 위한 융자 예산은 118억 2,500만원이고, 신청자 중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발전사업자에 한하여 지원함

[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현황

세부사업 (회계, 코드)	주요내용	사업시행주체 (사업시행방법)	예산(백만원)
			2026년(제1차 추경)
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전력산업기반기금, 5202-304)	(생산및시설자금)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를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한국에너지공단(융자)	880,29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표 2]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 상세내용

자금 용도		예산(백만원)	지원한도액	대출기간	대출금액 (이자율)
시설 자금	풍력분야	880,294	800억원 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26.3Q 2.50%)
	태양광분야		300억원 이내		
	햇빛소득마을 (융자·이자보전)		300억원 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노후인버터교체		5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바이오분야		100억원 이내		
	기타에너지원		150억원이내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산자금		2,000	300억원 이내		
	바이오분야		100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주: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노후 풍력설비 교체 비용을 지원할 예정임³⁾

2)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88호(‘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추가공고’)에 따르면 노후 인버터 교체지원 분야는 용량 50kW 이상 발전소 내 2019년 이전 설치하여 노후화된 인버터를 대상으로 함
3)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6.18.), ‘노후 풍력설비 안전관리체계 개편...’육상풍력 전주기 관리 강화방안‘ 공개’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 교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으나, 현 시점에서 현행 사업의 확대 및 신규 사업의 추진 여부와 지원 대상 및 금액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가 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nabo.go.kr